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610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 지분을 50%씩 나누어 중국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1. 11월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1층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2. 2. 22. ① 위 상가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으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되, 그 대표는 피고로 하고, ② 공동사업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각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③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되, 피고는 위 중국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로 피고가 관리하는 2022. 3월분 매출액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2022. 3. 17.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중국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22형제13247호로 위 중국음식점의 근로자들인 E, F, G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를 받던 중 2022. 9. 21.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에 임차보증금과 개업비용을 절반씩 각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피고는 200만 원만 지출하였고, 2021. 11월부터 2022. 2월까지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사업자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2022. 2월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는 2022. 3월분

매출액과 사업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되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고, 인건비 3개월분, 권리금, 전기세, 수도세, 직원기숙사 월세, 거래처 미수금 등의 정리비용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아간 위 7,000만 원으로 위와 같은 사업장 정리에 사용하지 않았고, 2022. 3.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매출액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임금채불로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결국 피고는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았고, 받아간 7,000만 원으로 사업장 정리에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갔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송금한 7,000만 원을 기존에 발생한 동업채무의 정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사실은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동업채무의 정산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업채무를 정산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비록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17.까지의 3월분 매출액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정산약정금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22. 3. 17.까지의 3월분 매출액이 1,1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월분 매출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